

# 「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8(목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
나. 회부일자 : 2013. 12. 4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3. 12. 4(월) 제19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감사실장 박태영)

### 가. 제안설명

- 기금 용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, 연결조문 용어정비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재정용자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.(안 제6조제2항, 제13조제2항, 제16조)
-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시 이행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.  
(안 제10조의2)
- 오탈자 정정 및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을 활용하고자 설치하고 있습니다.  
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, 사회복지기금,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으로 현재조성 액은 7,325백만원으로 이중 7,000백만 원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기금심의 위원이 안전심의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·회피·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자금의 용자규모의 적정성과 용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생 략》

### 5. 토론요지

《없 음》

### 6. 심사결과

《원안의결》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《없 음》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건의사항 : 없 음
- 기타 특별한 사항 : 없 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

##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서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조례 규정”을 “조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-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- ③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조례 규정”을 “조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위원회에서 예외로”를 “위원회에서”로,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

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6조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검토하여야 하고,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기금 결산보고서”를 “기금결산보고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말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용자기준) ①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용자대상의 적정성
2. 재무구조의 건전성
3. 상환 가능성

②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용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